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신설(안 제17조의2)

-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
 ⇒ 고지서 1장당 150원

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
 ⇒ 고지서 1장당 300원

○ 인용조문 변경(안 제19조)

- 지방세법 개정(2010.12.27)으로 인용조문 변경
 (「지방세법」제13조 제3항 ⇒「지방세법」제13조 제5항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 및 제92조의2

5. 검토의견

○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에 따른 세액공제기준 신설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자치입법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